

부적정한 예산 사용 근절을 위한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「예산집행지침」 개정

(한국주택금융공사, 이재상 과장, 02-2014-8514)

□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-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고질적인 관행 등으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근절되지 않음
- ‘11년 이후 내부청렴도(업무청렴지수) 중 예산집행 부문은 2년 연속 크게 하락*하여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
 - * 9.72점(‘10년)→7.23점(‘12년)

□ 추진실적

-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(취약성 경비 집행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) 및 부정적 집행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실시

〈주요 부적정 집행 사례 및 원인분석〉

부적정 집행 사례	원 인 분 석
■ 심야시간(23:00~08:00) 및 휴일에 명확한 증빙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 ■ 관할구역 및 출장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■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■ 외부참석자, 내부참석자 등 기재 소홀 ■ 50만원 초과건 중 전체 참석인원수 미기재 ■ 대내용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 ■ 출장 실비인 택시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	■ 법인카드의 심야시간 및 휴일 사용에 대한 경각심 미흡 ■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■ 제한업종에 대한 법인카드사용기준 반영 및 카드회사 통지 필요 ■ 접대,사례 성격을 감안 집행자가 집행근거 기재에 소극적 ■ 예산운용지침 운용방법 혼동 ■ 업무추진비 비목의 사업내용 혼동 ■ 업무추진비 비목의 사업내용 혼동

- 업무추진경비의 비목간 사용목적을 명확히 숙지시키고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해 「예산집행 적정성 체크리스트」 도입 및 출장비, 당직비, 연수비 등의 사용금지경우를 구체화

<‘13년 예산집행지침 주요 개정 내역>

구 분	개선 사항				
업무추진경비	■ 업무추진경비*의 경우 비목간 사용목적을 명확히 숙지하여 사용할 것 * 부점운영비, 부점회의비, 사업회의비, 업무추진비, 채권발행비				
	구 분		비접대성		접대성
			간담회 등	단순업무협의	사업관련협의
	대내 사용	부점내	부점운영비	부점회의비	사업회의비 채권발행비
		부점간			
	대외사용				업무추진비
	■ 예산의 부적정 집행 방지를 위해 집행책임자 및 출납 직원은 개별지급 건마다 ‘예산집행 적정성 체크리스트’로 사전 점검 실시하고 서명·날인				
시내외출장비	■ 사무실 인근에서 단순업무 수행시에는 출장비 지급 금지 ■ 일일 당일귀임여비 2회 이상 지급 금지				
당직비	■ 시간외근무 중 발생한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비 지급 금지				
국외여비 및 연수비	■ 국외출장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과 유사한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금지				
차량유지비	■ 개인차량에 차량유지비 사용 금지				

□ 파급효과(성과)

- 주말·휴일,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건수가 큰 폭*으로 감소
 * (‘11~’12년 1분기당) 169건 → (‘13년 분기당) 119건 : 29.5%감소

※ ‘13년에는 대부분 워크숍, 신입직원 채용 등 외부행사, 체육행사, 회식 결제 지연 등으로 소명 완료

- 업무추진경비 사용목적 명확화 및 예산집행 적정성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내·외부 참석자 미기재, 업무추진경비 비목 혼동 사례 근절

□ 추진 근거

근거 종류	문서명	시행일자	문서번호
지침	2013년 예산운용지침 통지	2013.02.08	기획조정실1256-0106
지침	2013년 예산운용지침 개정 통지	2013.09.05	기획조정실1259-0622